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62 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 김수흥・양경숙・소병훈

김주영 • 안규백 • 윤준병

이원욱 • 고용진 • 이수진॥

이용호 · 양정숙 · 김진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주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어 수입맥주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.

그래서 정부는 2021년 말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맥주의 80%만 적용토록 세율경 감 특례를 두었지만,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의 제한, 음주문화 변화로 인한 와인 등 수입주류 급증 등으로 인 하여 생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점, 유흥업소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생맥주에 대한 조세경감을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해서 시행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

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). 법률 제 호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세율) ① 주류에 대한 세율	제8조(세율) ①
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발효주류: 다음 각 목에 따	2
른 세율	
가.•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맥주: 2021년 2월 말일	다
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	
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	
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,3	
00원. 다만, 별도의 추출장	
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	
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	
맥주로서 <u>2021년 12월 31</u>	
<u>일</u>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	<u>2023년 12월</u>
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	31일
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	
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	
율의 100분의 80으로 하	
되, 100원 미만은 버린다.	
3. • 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